

# 建築法施行規則中改正

建設部令 第56號

1968年 6月 14日 公布

建築法施行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第1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建築法施行令(이하 “令”이라 한다)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許可申請을 하고자 하는 者는 別紙 第1號書式 建築許可申請書의 正本 및 副本에 다음 圖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다만, 建築法(이하 “法”이라 한다) 第5條 第1號 및 第4號의 建築物에 있어서는 (다)欄에 揭記하는 圖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.

第8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第8條(駐車場設置를 필요로 하는 建築物) 令 第111條 2의 規定에 의한 駐車場의 設置를 필요로 하는 建築物이라 함은 學校·事務所·銀行·病院·劇場(映畫館·演藝場·集會場을 포함한다)·觀覽場·百貨店·舞踏場, 公衆의 用에 공하는 浴場, 市場·旅館·共同住宅·工場·倉庫·貯藏庫·火葬場·屠殺場을 말한다.

別紙第1號書式 및 別紙 第9號書式을 각각 別紙와 같이 한다.

附 則

이 令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.

| 圖書의 種類 | 表示하여야할 事項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가      | 附近案内圖                     | 方位·道路 및 目標가 되는 地物  |
|        | 配置圖                       | 縮尺·方位·垜地의 境界線, 垜地內에 있어서의 建築物의 位置, 申請에  관계되는 建築物과 다른 建築物과의 區別, 擁壁·우물 및 汚物淨化槽의 位置, 垜地가 接하는 道路의 位置 및 幅員 |
|        | 各層平面圖                     | 縮尺·方位·간살잡기 各室의 用途, 壁 및 가새의 位置 및 種類, 통채기둥 開口部와 防火門의 位置 및 延燒의 憂慮가 있는 部分의 外壁 構造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汚物淨化槽의 構造圖                | 汚物淨化槽의 모양 構造 및 크기  |
| 나      | 二面以上の 立面圖                 | 縮尺·開口部의 位置 및 延燒의 憂慮가 있는 部分의 外壁과 처마 안의 構造   |
|        | 二面이상의 斷面圖(法第5條 第4號는 제외)   | 縮尺 바닥의 높이, 各層 천정의 높이, 처마 및 처마의 기장, 처마 높이의 建築物의 높이  |
| 다      | 基礎伏圖 各層바닥 伏圖 봉지틀 伏圖 構造詳細圖 | 縮尺 및 構造耐力上 主要한 部分의 材料 種別 및 치수  |
|        | 構造計算書                     | 建築物의 概要, 構造計劃, 應力算定 및 斷面算定   |

